



" 50년을 넘어 다 함께 미래로!"
<직인생략>

 인천원예농협



수신 : 건의

(경유)

제목 : 개인신용정보보호 준칙(예) 일부개정 시행의 건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준칙(예)일부개정 시행
(중앙(정보보호)18302-50740, 2021.12.27.)

- 아 래 -

1. 목적 : 2022년 01월 01일자로 개인신용정보보호준칙(예)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현행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유

☐ 신용정보법 및 감독규정 등 상위 법률 내용 반영

☐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대외감독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사전 대비

붙임. 1. 개인신용정보보호준칙(예) 일부개정(안) 1부.

2. 개인신용정보보호준칙(예) 현행.개정(안) 대비표 1부. 끝.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장

시행 : 인천품(원예)18302- 70 / (2021. 12. 28.) 접수 :

우22544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4 / 전화 032-761-2201/ FAX 032-761-2210

담당 : 과장보 김명철(E-mail : nh130815-4@nonghyup.com) / 공개구분 : 공개

시행 : 인천품(원예)18302- 10/ (2021. 12. 28.)

제목 : 개인신용정보보호 준칙(예) 일부개정 시행의 건

담당자	책임자	상 무	상임이사	조합장
김 병철	홍 인호	임재경	전결	김재

협조자					

의견란		
직급	성명	내 용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직인생략



수신 :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개인신용정보보호 준칙(예) 일부개정 시행

정보보호 실천! 100년 농협을 위한 약속입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칙(예)」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하오니 각 농축협에서는 「제규정관리규정(모범안)」 제6조에 따라 개정·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 사유

- ☐ 신용정보법 및 감독규정 등 상위 법률 내용 반영
- ☐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 대외감독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사전 대비

2. 주요 개정내용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공개에 관한 사항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사실 조회권, 상거래 거절 근거 고지 등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시 본인여부 확인사항 반영
-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 시 고지사항 등

3. 시행일 : 2022.01.01.

- 붙임 : 1. 개인신용정보보호준칙(예) 일부개정(안) 1부
2. 개인신용정보보호준칙(예) 현행·개정(안) 대비표 1부. 끝.

정 보 보 호 부 장

수신자 : 중앙(본부),지본,군(중앙),교(중앙),사(중앙),계(중앙),농,농지,축,축지,품,품지

시행 : 중앙(정보보호)18302-50740 2021.12.27. 접수 : 2021033385 2021.12.27
우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본관 8층 / 전화 02-2080-5227 / FAX
02-2080-5230
담당 : 계장보 서수연 (E-mail : yy1009@nonghyup.com) / 공개구분 : 부서공유

(붙임3)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칙(예)

소관부서 : 정보보호부(T:5229)

[2006.06.12. 제정]

[2014.12.01. 개정]

[2015.12.11. 개정]

[2018.04.09. 전부개정]

[2021.01.06. 전부개정]

[2021.07.05. 개정]

[2022. 1.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감독기관이 정한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준칙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업무처리절차는 정보보호 업무방법(예) 또는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021.07.05. 개정)

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다.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마. 신용정보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란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본 조합의 신용정보관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동의서”란 신용정보법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말한다.

7. “동의 철회권”이란 고객이 더 이상 본인 정보를 제3자(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회사 등을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수탁자”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사무소”란 본 조합의 본점 및 지사무소(지점, 간이지점, 분사를 포함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0.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이란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업무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1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동화평가"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5.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2021.07.05. 신설)

제4조(업무주체별 역할) ① 본 조함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관을 위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사무소별로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시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해당 사무소의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사무소의 신용정보관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개인신용정보 처리기준

제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본 조함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함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본 조함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합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 조합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을 고지하여야 한다.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보제공 동의 시의 혜택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1.1. 개정)

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복수인 경우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다.

⑥ 본 조합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4 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 및 동 기관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07.05. 전문개정)

제6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6조제1항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3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2021.07.05. 본조신설)

제6조의4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본 조합이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6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의5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07.05. 개정)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사항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다.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라.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사항

가.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다.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6조제3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본 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의 축소 불가)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본 조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해당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1.07.05. 신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2021.07.05. 신설)

제6조의5 (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본 조합은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1.07.05. 개정)

1. 고지사항
2. 정보활용 동의등급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① 본 조합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임직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본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2021.07.05. 개정)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1. 개정)

1.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예금·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의 폐기절차·시기 등 관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사무관리준칙(모범안)」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결과를 정보보호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22.1.1. 개정)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관리 책임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접근권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내역을 3년간 보존하는 방법 (2021.07.05. 개정)

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으로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2021.07.05. 전문추가)

-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할 것
-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② 본 조항이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2022.1.1. 개정)

③ 본 조항이 제2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는 제1항제1호라목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본 조항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항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항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하여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파기 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합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본 조합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본 조합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⑦ 본 조합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⑧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6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본 조합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이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제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본 조합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라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가. 결합의뢰기관간 외에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나. 결합키 생성방식 채택 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3. 정보집합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제공·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처리의 위탁) ① 본 조합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세** 법령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의미한다)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고, 그 위탁 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교육 내용에는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07.05. 개정)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고, 본 조합과 수탁자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 보호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2021.07.05. 개정)

1.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2.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간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개인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개인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8. 개인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제1호 내지 제10호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12조(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본 조합의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담당직원은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사항”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 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 제3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사항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기한까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1.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2항제1호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내부관리계획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조합인 경우〉

제13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본 조합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1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2. 전무·상무 또는 그 밖에 임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이 2조원 미만이거나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조합인 경우〉

제13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본 조합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1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2. 전무·상무 또는 그 밖에 임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직원
3.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제14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임무)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사무소별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합장 및 이사회(조합장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2021.07.05. 신설)
-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1.07.05. 신설)

제15조(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본 조합은 효율적인 신용정보관리·보호 업무를 위해 사무소별로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를 각각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속한 신용정보관리·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업무 담당 팀장이상 직원에게 임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1.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지정
- 2. 신용정보취급자 관리·감독·교육
- 3. 신용정보 조회권한 신규부여·변경·말소 등 필요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및 정비
- 4. 신용정보 오·남용 여부 점검
- 5.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피해의 구제,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 6. 신용정보파일의 관리·보호·파기
- 7. 그 밖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업무처리 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로부터 직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는 점검결과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지정 등) ① 본 조합은 신용정보 관련업무 실무담당 직원 중 1인 또는 업무별로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를 사무소별로 각각 지정·운영하여 임직원이 신용정보 업무를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확인 및 관리·감독
- 2. 직원별 신용정보 조회내역 적정성 확인
- 3.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피해의 구제,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관리

4. 그 밖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업무처리 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점검결과는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공시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22.1.1. 개정)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4.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7. 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한다.
(2021.07.05. 전문개정)

제18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본 조항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훼손 및 파괴, 자료 출력 등 그 밖의 위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및 본회의 「정보기술 보안준칙(예)」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본 조항이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을 적용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21.07.05. 개정)

제19조(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

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 가. 수집·이용한 날짜
 - 나. 수집·이용한 정보의 항목
 - 다.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 가. 폐기한 날짜
 -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그 밖에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내부통제)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 및 교육, 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수탁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안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부적정할 경우 계약해지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반 점검 사항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변경 시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합 「감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개인신용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제22조(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이란 본 조합이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 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1. 개정)
- ⑤ 제4항에 따라 누설 신고 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누설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2.1.1. 개정)
-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한 유출통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개인신용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022.1.1.개정)

제5장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 조합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관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되고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 조항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지체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07.05. 개정)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청구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2021.07.05. 신설)

제25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사실 조회권)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위험관리 등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③ 제1항의 조회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2022.1.1. 개정)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07.05. 개정)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본 조합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는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채택한다. (2021.07.05. 신설)

제2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본 조합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5.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본 조합이 제3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정보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정보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6. 신용정보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연체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철회권)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6조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본 조합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본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또는 본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본 조합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

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2.1.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022.1.1. 신설)

제27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한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본 조합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본 조합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 조합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6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중단할 수 있다. (2022.1.1. 개정)

⑤ 제1항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항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2.1.1. 개정)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사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본 조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022.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제28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㉕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㉔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다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㉔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㉖ 본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㉗ 본 조합은 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제28조의3(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본 조합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2. 공제 등의 대출거래
3.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충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제28조의4(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28조에 따른 고지요구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본 조합에 ㉔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29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30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 조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수행하는 소관 사무소는 신용정보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 조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조합이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사본, 여권사진, 여권사진사본, 여권사진의 이용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 조합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서 전송받은 경우 그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제31조(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본 조합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전년도에 수행한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대상자 및 수집·조사·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본 조합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매 분기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그 밖의 사항

제32조(손해배상의 보장) 본 조합은 신용정보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분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본 조합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본 조합은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의 제재) 본 조합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합의 인사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금지사항)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② 본 조합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를 준용한다.

부 칙(2021. 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 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4(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6조의5(정보활용 동의등급), 제27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21.2.4.(2021.07.05. 개정)
 2. 제30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21.8.4.
- 제2조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 준칙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준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7. 5.)

이 준칙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 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2021.8.4.

부 칙(2022. 1. 1.)

이 준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4)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칙(예)」 현행·개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등의) ① ~ ③ (생략) ④ <u>필수적 동의를</u> <u>서비스 제공의 관련성을</u> <u>선택하여야</u> 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보제공 동의 시의 혜택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⑧ (생략)	제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등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필수적 동의를</u> <u>서비스 제공의 관련성(금융거래 등 상거래 이외)</u> <u>체결 및 이행의 관련성</u>을 고지하여야 한다.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보제공 동의 시의 혜택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별표4의2] 1.3.2 반영
제8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① (생략)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① (생략)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보호준칙(예)」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특별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 (생략)	2의2.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기술적,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임금·보령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제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기록부처 다목까지의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미삭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① (제8조제2항 단서 조항으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제9조(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① <삭제>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본 조항이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8항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③ (생략) ④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는 제2항제1호리목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는 제1항제1호리목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생략) 1. ~5. (생략)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심명 또는 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설> 7. (생략) 8. (생략) ② (생략)	제1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심명 7. 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현행 7호와 같음) 9. (현행 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2.1.2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공개에 관한 사항 반영
제22조(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보고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	제22조(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 4조와 같음)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2.1.1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누설 신고 시 (이하 생략) <신설>	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적인 공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누설 신고 시 (이하 생략)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한 유출방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개인신용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되고 관련된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 조항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되고 관련된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 조항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이동
제25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사실 조회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5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사실 조회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조회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4.1.1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철회권) ① ~ ② (생략)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u>행사방법</u>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u><신설></u>	제2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철회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u>행사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u>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u>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u>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4.4.1, 4.4.2 반영
제27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⑥ (생략)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u>철회할 수 있다.</u> ⑧ 제1항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 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항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생략)	제27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u>철회·중단할 수 있다.</u> ⑧ 제1항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 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항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4.6.1, 4.6.2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8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본 조항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본 조항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4.3.1 중 본인확인방법 관련 내용 반영
<신설>	부 칙(2022. 1. 1.) 이 준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